■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19. 12. 24.>

##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

<u>※</u> [ ]에는	<del>:</del> 해당하는 곳에 "√"표	를 합니다	:									( 앞쪽)
접수번호 접수일		일							처리기간	수당 등 제7조·	공무원 명예퇴직 등 지급 규정」 제8조에 따름	
신청인 기재란	① 소속 ② 전(前) 소속 (특수경력직공무원과 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 경우만 작성)	<u>·</u>			공무원 구박	퀻	[ ] 일반 [ ] 특정	직 직(	)	④직급· (호봉)	·계급	• 직무군 -
	한글			(6)	생년월일							
	⑤ 성명 <u></u> 한자			① 주소		[						
	⑧ 전화번호(자택)			9	근속기긴	-	년	월		⑩ 정년회	직일	
	① 비위·형벌	사항 [ ] 있	음 [] 없음	[	] 성계저문 3 ] 형(刑) 획 ] 「형법」 (선고일: ] 「형법」 (확정일:	간 정( 제1 제:	중[] 싱/ 확정일: 29조부터 , 355조 또	#의결 요  제1323 선고형 는 제35 형량:	구 중[] , 형량 조까지에 !: 56조에 구 조에 규정	성계저문으로 량: ) 규정된 범조 ) 규정된 범죄	- 승진임(   관련 : (직무 된	보되어 징계의 용제한기간 중 형의 선고유예 반련) 형 확정 형의 선고유예
소속 기관 기재란	⑫ 정년 구분	[]연령	정년 []계급	급정	년	(	13 정년			세(년)		
	④ 경력직 퇴직 또는 임기제 경과기간	후 특수경 임용 후	경력직 퇴직 시 퇴직 시까지의	[	] 임기제 ] 별정직		년	월	확인	인사부서		서명 또는 인)
	⑤ 정년잔여기간 (수)자급대상기간	(	년 개월 년 개월)	16)	수당청구	액	및 산출	·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				
	⑪ 비위 • 형벌 사항 확인	[ ] 있음			] 성계저문 3 ] 형(刑) 획 ] 「형법」 (선고일:	각 정( 제1	중 [ ] 싱/ 확정일 : 29조부터	웨의결 요 제132: 선고형 는 제35	:구 중 [ ] :  호 56조에 구 E에 규정!	싱계저문으로  량 :   규정된 범죄     규정된 범죄	. 승신임( )   관련 (진무 표	보되어 징계의 용 제한 기간 중 형의 선고유예 반련) 형 확정 형의 선고유예
		확인	인사부서의 장	(서명	명 또는 인)	연금	·부서의 정		병 또는 인	감사부서	의 장	(서명 또는 인)
「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											다. 서명 또는 인)	
1.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. 다만,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 참부서류 2. 명예퇴직원(「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별지 제2호서식) 1부 3. 경력증명서 1부(「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											
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. 년 월 일												
소속기관의 장 직인												

##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

- 비고 1.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,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시담당자가 적은 후, 인사·연금·감사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습니다.
  - 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해야 합니다. 다만,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 니다

## 작성방법

- 1.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을,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전의 소속기관을 적습니다.
- 2. ③란은 해당란([])에 "√"표시를 하고, 특정직공무원(검사, 외무·경찰·소방·교육 공무원 등)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()에 적습니다.
- \*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,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일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적습니다.
- 3. ④란을 적을 때에는,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적고,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신분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 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직전의 직급(계급)·직무군(전문경력관의 경우)·호봉을 적습니다.
- 4. ⑨란은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5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적되,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5.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"√"표시를 하고,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확정일과 형량을 적고,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일과 선고형을 적습니다.
- 6. ⑫ ~ ⑪란은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자가 적고, 인사·연금·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습니다(⑭란은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 근무기관의 인사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습니다).
- 7. ⑫란은 해당란에 "√"표시를 합니다.
- 8. ⑬란은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에 따라 해당 정년을 "세" 또는 "년"으로 적습니다.
- 9. ⑯란은 명예퇴직 예정일의 다음 달 1일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습니다.
- 10. ⑪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 파악・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 공무원이 작성합니다("√"표시).

